

2019학년도 교비유학생 선발계획



2019. 08. 09

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부

2019학년도 교비유학생 선발계획

1. 목적

- 우리대학 학부과정 졸업(예정)자들 중 해외 대학 석·박사학위 유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경감
- 교비유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및 우수 연구자 성장 지원, 우리대학 위상 확립
- 교비유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우리대학으로 돌아와 교수 및 연구인력으로 충원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일조

2. 선발개요

- 선발인원 : 예산 범위 내
- 전공분야 : 전 분야
- 수학과정 : 석사, 박사, 석·박사 연계과정
- 파견지역 : 미국, 캐나다, 호주, 중국, 일본, 유럽 소재 국가 외
- 누적인원

[2018년말 기준, 단위 : 명]

연도	대만	독일	몽골	미국	벨기에	영국	일본	중국	캐나다	프랑스	핀란드	호주	싱가폴	스페인	계
1984				1											1
1985				2											2
1986				2											2
1987				2											2
1988				2											2
1990				3											3
1991				3											3
1992				3											3
1993				2											2
1994				4											4
1995				3											3
1996				2											2
1997				4											4
1998				3											3
1999				4					1						5
2000				4					1						5
2001				8		1									9
2002				9											9
2003				7											7

2004				5	1							2			8
2005				2											2
2006				4											4
2007	1			5			1	1							8
2008		1		6		1	2			1					11
2009				4			1								5
2010			1	3			1			1					6
2011				3			2				1				6
2012				5								1			6
2013				3			1							1	5
2014		1		2											3
2015						1	1								2
2016				4			1								5
2017				3											3
2018				3		1	4	2							10
누계	1	2	1	120	1	4	14	3	2	2	1	2	1	1	155

□ 지원자격

- 본교 학부 졸업생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
- 재학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학부 졸업생의 경우 지원과정 별 지정된 해당기간 이내 졸업자에 한함
(단, 남자의 경우, 졸업 후 군 복무기간 제외)
 - 석사과정 지원자 : 학부 졸업일로부터 7년 이내(지원기한일 기준)
 - 박사과정 지원자 : 학부 졸업일로부터 10년 이내(지원기한일 기준)
- 학부 전체학년 성적 평점이 다음과 같은 자(소수자리 반올림 없음)
 - (1) 2012학년도 2월 22일 졸업자까지 : **평점 3.29 이상인 자**
 - (2) 2012학년도 8월 22일 이후 졸업자 : **평점 3.00 이상인 자**
 ⇒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 기준에 따름
- 2019년도에 입학허가를 받았거나, 2019년도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
- 2018년도 제2학기(우리대학 기준) 또는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입학할 하여 현재 재학 중인 자로 수업연한 잔여학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자
- ※ 어학연수생은 지원 불가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전문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10.3.22., 2013.8.6., 2015.12.24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7. 징계로 과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[전문개정 2008.3.28.]

□ **선발기준** : 다음 각 항목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

항 목	배점	비 고
학부과정 전체학년 성적	100	·평균 백분율 점수 적용 ·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성적만 반영
면접시험	100	·평균 점수 적용(총점/심사위원 수) ·각 심사위원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 ·면접방법* : 대면 또는 화상면접, 전화면접
계(총점)	200	총점 순 선발

* 국내 체류자는 반드시 대면면접에 응시해야 하고, 해외에 체류 중인 자는 화상 또는 전화 면접 가능

□ **심사위원단 구성** : 3명

- 위 원 장 : 국제협력본부장
- 심사위원 : 국제학술교류심의위원 2명
 - ※ 면접시험은 국어로 진행하나, 지원 국가 언어 진행도 가능함
 - ※ 심사위원단 구성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

□ **선발 원칙**

- 동점자 처리 : 생년월일이 빠른 자 우선 선발
-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, 후보자 순위에 포함하지 않음
 - ※ 대면면접의 경우 면접시험 불참 시 결시처리 됨
 - ※ 화상 또는 전화면접의 경우 우리나라 시간 기준, 사전통보된 면접시간 중에 통화 및 화상연결이 가능하여야 하고 통화 및 화상연결 불가 시 결시처리 됨
- 합격자의 포기 또는 파견 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, 차순위 후보자를 합격 처리

□ 선발 일정

구 분	일정(예정)	비 고
서류접수기간	2019.08.19(월)~08.23(금) 18:00까지	우편접수 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면 접 시 험	2019.08.28.(수) 11:00 예정	면접시간, 장소 : 추후공지
합격자 발표	2019.08.29.(목) 18:00 예정	개별안내 및 국제협력부 홈페이지 공지 (http://ioffice.cbnu.edu)

※ 상기 예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3. 서류접수

□ 접수기간 : 2019.08.19(월) ~ 08.23(금) 18:00까지

※ 주말은 접수하지 않음

□ 접수방법 : 국제협력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

○ 우편접수는 2019.08.23(금) 18:00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, 우편물 분실, 담당자에게 서류 미전달 등의 사유로 인한 제출서류 미접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음

※ 우편접수시, 접수상황 체크 필수

○ 접수처

- 국내우편 : 54896,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

전북대학교 국제협력부(뉴실크로드센터 3층)

교비유학생 담당자 앞(김인수 063-270-2184)

- 항공우편 : Gim InSu(82-63-270-2184)

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(1-33 New Silkroad Center 3rd Floor),

Chonbuk National University

567 Baekje-daero, Deokjin-gu, Jeonju-si, Jeollabuk-do, 54896 Republic of Korea

□ 제출서류 :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

○ 교비유학생 지원서 1부 [서식 1]

○ 수학계획서 1부 [서식 2]

○ 입학허가서(2019년도) 또는 재학증명서 1부(2018년도 하반기, 2019년도 상반기 입학자)

○ 지도교수 추천서 1부 [서식 3]

○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
- 대학 전체 학년 성적 증명서 1부
- 이력서 1부
- 여권 사본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 4]
- 해당 언어 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원본 및 복사본 1부
 -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원본은 복사본과 대조 후 반환
 -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(서류접수기한일 기준)
 - ※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(각종 증명서 복사본 제출 시 불인정)
 - ※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
- 본인 명의 국내 은행 통장사본 1부(합격자에 한함)

4. 장학금 지원

□ 장학 지원금 : 8,000,000원(수학국가별, 학위과정별 구분 없음)

□ 지급방법 : 장학금 신청서류 접수 후 지급

□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

-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[서식 6]
- 서약 및 재정보증서 1부 [서식 8] : 인감증명서(본인 및 친권자) 및 친권인의 재산세(또는 농지세) 납세실적 증명서(납세액은 연 3만원 이상) 첨부
- 주민등록등본(친권자 확인용)
- 여권 사진면 및 비자면 복사본 1부
- 출국 항공편 전자항공권 복사본 1부
- 여권 내 유학국가 입국사실 확인면 사본 1부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부
 - *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석사과정을 해외에서 마친 학생의 경우에만 한함
- 본인 명의 국내 은행 통장 사본 1부(장학금 수령용)
- ※ 체재지 도착 보고서 [서식 9] : 출국 1개월 이내 제출
- ※ 학기 개시 6개월 후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1차 유학보고서 제출
- ※ 유학보고서 : 소감문 또는 후배 지원자를 위한 조언, 유학준비 시 유의사항 등 자유 주제
- ※ 장학금 수령 후 입학에 포기하거나 자퇴하여 교비유학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, 합격된 당해연도에 입학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,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
- ※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

5. 선발자 의무사항

□ 유학수속

- 합격자는 합격 당해년도 이내에 국외유학 및 국외여행에 관한 수속 일체를 마쳐야 하며, 연기할 수 없음
- 입국허가, 출국, 기타 일체의 활동과 비용은 선발자 본인 부담으로 함

□ 학위취득 인정기간

- 교비유학생 지원 시 피력한 소정의 학위를 기한 내에 취득하여야 함
 - 석사과정 : 입학일로부터 3년 이내
 - 박사과정 :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
 - 석·박사 통합과정 : 입학일로부터 학위과정 연수 + 1년 이내

□ 보고서 제출 : 유학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
- 체재지 도착 보고서 [서식 9] : 도착 1개월 이내에 제출(재학생은 즉시 제출)
- 1차 유학보고서 : 학기 개시 6개월 후 제출
- 수학 상황 보고(연 2회, 학기별) :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제출
- 학위 취득 시 : 학위증 사본 및 ‘최종 유학보고서’ 제출
- 거주지 변경 시마다 거주지 변경 보고(체재지 도착보고서에 작성)
- ※ 체재지 도착보고서 및 유학보고서는 서명날인 하여 항공우편(원본) 제출

□ 서류작성 및 제출

- 교비유학생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제출하는 모든 서류, 보고, 증명 등에 허위 사실이 없도록 하여야 함
- ‘서약서’의 내용 준수
 - 교비유학생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서약서 [서식 8]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비 유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인정이 취소된 자는 지원된 장학금을 총장이 지정하는 환수방법에 따라 상환해야 함

□ 기타사항

- 교비 유학생으로서 국위 손상 및 반국가적 행위를 금지
-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즉시 우리대학에 통보
- 문의 : 김인수 82-63-270-2184, cbnu_abroad@chonbuk.ac.kr

6. 참고사항

- 필요서류 발급 : 선발자의 유학수속 등을 위하여 총장은 다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음
 - 총장 추천서
 - 교비유학 인정서
 - 장학금 지급(예정) 증명서

- 대학 선정 시 유의사항
 - 비영어권 국가 소재 대학 지원자는 해당 국가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대학에서 수학하여야 함(단, 일부 국가 제외)
 - 비영어권 국가 합격자가 해당 언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 대학으로 진학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

- 장학금 환수
 - 환수사유
 - 교비유학생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
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경우
 - 서약 및 재정보증서 [서식 8] 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 - 환수대상자 : 본인 및 친권자
 - 환수방법
 - 교비유학생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일시 상환
 - 장학금 수령일부부터 환수 완료일까지의 이자를 징수할 수 있음(시중은행 일반대출 이율 적용)

수 학 계 획 서

- 성 명 :
- 유학국가 :
- 유학대학 :
- 전 공 명 :
- 수학계획 :

- 귀국 후 활동 계획 :

전북대학교총장 귀하

지 도 교 수 추 천 서

- 성 명 :
- 생년월일 :
- 전공학과 :
- 추천사유(구체적으로 기입)

위 학생을 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교비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2019. . .

[추천자] 대 학 :
학 과 :
직 급 :
성 명 : (인)

국제협력부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국제협력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국제협력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 22조에 근거하여, 다음과 같이 교비유학생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교내 부서 간 업무협조 등 공적인 목적 사용에 개인정보 필요 시 제공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여권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 등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수집일로부터 5년
4.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
: **개인정보 제공자**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제협력부에서 제공하는 교비유학생 관련 공지사항을 받을 수 없거나, 공적인 행정처리에 활용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 성명 : (인 또는 서명)

국제협력부 귀중

교 비 유 학 인 정 서

- 주 소 :
- 생년월일 :
- 성 명 :
- 학 적 :

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비유학을 인정함

1. 유학기간 :
2. 유학대학 :
3. 수학과정 :
4. 전공 및 학과 :
5. 장학금 지급액 :

2019. . .

전 북 대 학 교 총 장

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

□ 금 액 : _____ 원

□ 내 역 : _____ 년도 교비유학 장학금

_____ 년 _____ 월부터 _____ 년 _____ 월까지

_____ 대학 유학

위 금액을 신청합니다.

2019. . .

본 인	성 명	(인)
	생년월일	
	주 소	
친권자	성 명	(인)
	생년월일	
	주 소	

전북대학교총장 귀하

장 학 금 수 령 확 인 서

- 금 액 : _____ 원
 내 역 : _____ 년도 교비유학 장학금
 _____ 년 _____ 월부터 _____ 년 _____ 월까지
 _____ 대학 유학

위 유학과 관련하여
 교비장학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. . .

본 인	성 명	(인)
	생년월일	
	주 소	
친권자	성 명	(인)
	생년월일	
	주 소	

전북대학교총장 귀하

서 약 및 재 정보 증 서

- 성 명 :
- 유학대학 :
- 수학과정 :

위 사람이 전북대학교 교비장학금으로 유학함에 있어 소정 유학기간중의 학비 및 생활비 일체를 부담할 것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 및 서약합니다.

1. 학업에 전념하여 _____년 __월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석사 학위, 또는 5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함
2. 유학 기간 중에는 전북대학교 총장(이하 총장이라 함)의 지시사항을 잘 지키며,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유학국, 유학 학교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하는 일
3. 유학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함
 - 가. 수학 상황 보고(연 2회) :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
 - 나. 학위취득 시 : 학위증 사본 및 '2차 유학보고서' 제출
 - 다. 거주지 변경 보고(거주지 변경시마다)
4. 학업을 게을리 하거나 행실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.
 - 가. 수학 능력 부족에 대해 유학 대학 측에서 우리대학 총장에게 통보하는 일
 - 나.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
 - 다. 국위를 손상시키거나,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실이 공관 등으로부터 통보되는 일
5. 교비유학생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제출하는 모든 서류, 보고, 증명 등에 허위 사실이 없도록 함
6. 아래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지급받는 장학금 전액을 총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

에 일시 상환하며 장학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끝나는 날까지의 이자(시중은행 일반대출 이율 적용)도 부담함.

- 가. 입학취소, 자퇴 등으로 전북대학교 교비유학생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
- 나. 본 서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다.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된 경우

2019. . . .

본 인	성 명	(인)
	생년월일	
	주 소	
친권자	성 명	(인)
	생년월일	
	주 소	

전북대학교총장 귀하

첨부서류 : 1. 인감증명서 (본인 및 친권자)

2. 친권인의 재산세(또는 농지세) 납세 실적 증명서 ⇒ 납세액은 연 3만원 이상

